Mc.c.1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일시: 1997년 7월 1일 오후 2시~5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Sexual Violence
서울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TEL : 576-5450 / FAX : 576-7127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Sexual Violence
• 서울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 ㉾137-600
• TEL : 576-5450 • FAX : 576-7127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일시: 1997년 7월 1일 오후 2시~5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Sexual Violence
서울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TEL : 576-5450 / FAX : 576-7127

일 정 표

I부. 기념식

사 회: 최 영 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개회사

인사말 ..... 박 금 자(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이사)

축 사 ..... 정 금 자(한국여성개발원장)

..... 지 은 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연구소 소개 ..... 이 원 숙(본 연구소 소장)

축 가

II부. 기념 세미나

사 회: 김 옥 순(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주제발표: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 최 영 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국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 ..... 이 원 숙(본 연구소 소장)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의 동향 ..... 조 주 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종합토론:

이 상 덕(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김 경 애(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자료집을 내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성폭력 없는 사회, 평등한 성문화 창출을 위한 터를 닦아 온지 6년입니다. 그동안 상담소는 위기센터, 열림터를 개설하고 상담시간을 24시간으로 확장, 올해 6월부터는 P.C통신 상담의 개설 등 상담영역의 확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 두명이 한 팀이 되어 법률적 도움을 주는 토요법률상담, 재판 동행, 진정서 작성,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정지원 모임,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개인, 집단상담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심리상담지원위원회 등 내담자 지원활동을 체계화, 전문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내담자 지원활동 뿐 아니라 상담소는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실태분석을 토대로 각종 세미나 주최 및 연구자료집 발간, 성폭력 예방비디오 제작, 성폭력 특별법 제·개정운동, 성희롱 방지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6년간의 노력들로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틀과 내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문제 연구소를 개설하여 성폭력 문제를 본질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폭력이 개인적,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강화는 물론이고 성폭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사회 성문화와 성행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성폭력문제 연구소에서의 연구작업들, 예컨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 개발,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화 작업, 피해자 지원체계 모델 개,

가해자 연구 등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은 보다 활기찬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집은 성폭력문제 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자료집으로 우리사회 성폭력지원체계의 현황파악, 외국성폭력상담소들의 역사적 변천과정,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소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연구소의 밑그림을 그리고 틀잡기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성폭력문제 연구소를 이끌고 가실 이원숙 소장님, 장화정, 이경미, 김지혜 책임연구원님들, 신용자, 김준호, 권진숙, 김혜원, 변혜정 분과장님들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 옥고를 써 주신 이원숙, 조주현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옥순 연구실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덕 소장님, 김경애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1997. 7. 1.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이사 박 금 자
소 장 최 영 애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최 영 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Ⅰ. 국내 성폭력 실태

1. 실 태

법무연수원의 198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1975년에 2794건, 1987년에는 50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매 해 5000여건씩 신고되고 있으며 70년대에 비해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강간의 경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4.3배로 증가되었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단지 2.2%에 불과하다. 이 신고율로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 보면 한해에 25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의 76.4%가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 바 있고, 심한 추행은 23.7%, 성적 희롱은 48.6%, 강간미수는 14.1%, 어린이 성추행은 6.5%로 나타났다.

1992년 국제형사기구에 의하면 한국은 성폭력 발생율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폭력 개념을 단지 심한 추행이나 강간 미수, 강간 등의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여성에게 성을 매개로 해서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불쾌감이나 불안, 공포 등을 일으키게 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우리 나라 대부분 여성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을 통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만 5천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본 고에서는 이중 1996년 한해동안 접수된 1779건의 상담을 분석하였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 피해는 54건으로(3.0%)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지위가 낮은 여성과 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피해유형

강간은 916건(51.5%)이며 이중 단순강간이 867건(48.7%), 윤간이 49건(2.7%)이었다. 성추행은 863건으로 48.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전화등의 언어추행이 76건으로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749명으로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420건으로 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401건으로 22.5%, 7세까지의 유아가 198건으로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4.7%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308명으로 17.3%, 동네사람이 248건으로 14.0%, 직장상사와 동료 등이 201건으로 11.3%, 데이트 상대가 115건으로 6.4%, 동급생, 선후배 등이 63건으로 3.6%, 교사, 강사는 54건으로 5.1%이다. 이는 이제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을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5)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8.4%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이웃 아저씨, 가게 아저씨, 경비원, 교사 등의 주변 인물이다. 이는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린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주변인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6)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308건(17.3%)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족관계에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175건(56.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2%, 20대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2. 개인적 · 사회적 후유증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 개인적 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 인격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관계, 교우관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균형을 잃게 되어 점차 환경으로부터 고립단절되며, 또한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인격의 통합성을 상실하게 되어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임신, 낙태, 질의 통증, 불면증 등의 후유증을 나타낸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공포와 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수치심, 순결상실감, 성적 혐오감 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적인 후유증으로는 자위, 왜곡된 성정체감, 동성 애착, 이성혐오, 성폭력가해, 성기능장애, 성혐오, 불감증, 섹스와 애정의 혼란, 과잉 성행동이 나타난다.

(2) 사회적 후유증

어린이 성폭력은 청소년 문제, 매매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관이나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이 약한 사춘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 순결관에 의해 좌절감으로 방황하다 가출,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춘 여성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은 현재 일반 여성의 스트레스 제1요인이 되고 있으며 94%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성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게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남성은 여성을 대할때 가해자로 오인받을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사회적인 불신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발생 요인

(1) 2.2% 의 낮은 신고율

성폭력 범죄가 증가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2.2%의 낮은 신고율을 들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이 생긴 여자라는 순결상실감과 이에 대한 멸시가 가져오는 두려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서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신고를 꺼리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은폐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 소홀을 가져오고 단지 몸조심, 문단속 차원에 머물게 하여 성폭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또다른 성폭력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해자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동기는 성충동 보다는 분노나 소외감의 표현, 혹은 남성다움이나 힘의 과시이며 80%가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2)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현재 성폭력 범죄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성폭력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높아져 판사들이 처벌을 꺼려하는 또다른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성폭력이 대 여성폭력이자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성폭력 특별법에 정확하게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사법처리과정의 문제

현재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가정과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건을 전담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바른 인식이나 성폭력 수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고소를 포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4) 24시간 전일 운영제 강간위기 센터의 부재, 전문 상담소의 부족

신고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성폭력 전문 위기센터의 부재와 전문 상담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강간과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더구나 사법 처리과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처 극복에 있어서도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5) 남성중심적 성문화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주된 요인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즉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관대, 허용적인 반면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규범, 성관계를 상호간의 동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성관계로 간주하는 성기중심적 성인식이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6)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기능적 소모품이 되어간다. 특히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개방 문화가 음란·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들어오고 스포츠 신문들의 가학성, 폭력성이 공공연히 노출되는 현실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90%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음란비디오를 본 후 충동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한 경우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7) 위계적·권위적 사회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교사와 학생, 직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남자, 어른, 교사, 직장 상사 등에 의해 힘을 갖지 못한 여자, 아이, 학생, 부하직원에 대한 성폭력이 용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성폭력 발생을 조장하고 있다.

Ⅱ.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적 측면 : 성폭력 특별법

(1) 제정 배경

형법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 여성단체들이 1991년 8월부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3년 12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하여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 놓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제정 당시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접한 여성계가 주장한 주요 항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행과정에서 특별법의 미흡한 점이 드러나 현재 개정작업중에 있으며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2) 주요골자

특별법의 구성은 총 4장 37조로 되어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안의 목적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며, 제2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으로 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피해보호에 관한 조항과 상담소 설치 운영등에 관한 것이다. 제4장은 별칙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구제 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법이 처벌 조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특별법은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보호관찰제, 보호감호제 등을 도입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통합법이다.

(3) 문제점

1) 예방적 측면

현행법에는 국가의 예방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형제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 가해자들이 대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어렵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예방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여 성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

2) 처벌적 측면

a. 성폭력의 개념 규정

성폭력의 개념은『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이 개념은 피해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지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건노출이나 신분노출을 꺼려 고소를 어렵게 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일반적 태도를 여전히 나타나게 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을『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하여 원하지 않는 인간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개념 규정을 해야 한다.

b. 친고죄

친고죄에 관련된 사항으로 친족에 의한 강간, 신체장애자에 대한 준강간만을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함께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그외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친고죄의 존폐 여부는 성폭력을 어떤 범죄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로써 친고죄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서의 인식전환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c. 친족범위

친족의 범위를「존속 등 연장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는 친족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친족 성폭력을 특별법에 포함시켰던 의부나 양부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친족의 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시키거나 최소한 의부나 양부를 처벌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d.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직장내 성폭력일 경우 퇴사나 해고, 업무능력의 저하, 휴직 등 직장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별법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피해자는 또 한번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이중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e.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피해자의 신변보호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도 처벌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f. 성희롱 조항

특별법에서는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만을 특화시키고,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강간은 일반 강간의 범주로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직장내의 관계를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동료나 고객, 거래처, 직장알선을 미끼로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관련으로 일어나는 강간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성추행일 경우의 고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강간과 비교하여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해 진단서 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직장내에서 증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추행일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보이는 직장내 성희롱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3) 사후지원적 측면

a. 의료지원

특별법 제33조에 '의료보호' 조항을 보면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구체화시켜 지원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신고의무제

어린이인 경우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말라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 사실조차 은폐된다. 그러므로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특정 전문집단(의료인, 교사 등)만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c. 전담 경찰제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수사 절차상에서 보여지는 경·검찰의 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수사 과정중 피해자가 피해당시의 상황을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등의 이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d. 친권 유보 조항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려 해도 학교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전학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가해자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전학은 불가능하여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권유보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부 또는 의부에 의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존함으로써 자녀의 피해를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묵인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친족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을 일정기간 보장해 주는 기관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2. 제도적 측면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경찰서에 개설되어 있는 상담전화 제도이다.

우선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 지원은 현재 23개 상담소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다. 그리고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경찰서에 개설되어 있는 상담전화는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상담전화를 하더라도 전문 상담요원이 없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곳은 심지어 상담전화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3. 피해자 지원 측면

(1) 성폭력상담소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3개소이며 성폭력상담소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소들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현황파악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성폭력상담소 현황 파악을 위해 97년 6월중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전국 23개소 중 답변을 준 성폭력상담소 18개소이다.

1) 전국 성폭력상담소 현황

<표 1>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전국적 분포 ('96. 12. 31 현재)

시.도	상담소수	총사자수(명)	운영주체			설립주체	
			개인	법인		법인	개인
				사회복지	사단		
계	23	69	6	-	17	17	6
서울	4	12	1	-	3	3	1
부산	3	9	2	-	1	1	2
대구	1	3	-	-	1	1	-
인천	2	6	-	-	2	2	-
광주	1	3	-	-	1	1	-
대전	-	-	-	-	-	-	-
경기	2	6	-	-	2	2	-
강원	3	9	1	-	2	2	1
충북	1	3	-	-	1	1	-
충남	1	3	1	-	-	-	1
전북	1	3	-	-	1	1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3	9	-	-	3	3	-
제주	1	3	1	-	-	-	1

<표 2> 전국 18개 상담소 현황

연번	상담소명칭	개소시기	상근자수	상담원수	상담건수	재정현황			활동내용	운영상의 어려운점
						자급	국보	시보		
1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4.13	10인	150인	15,000	ㅇ	ㅇ	ㅇ	성.성폭력상담,지원체계연결,열림터운영,PC상담,위기센터.	재정난,의료지원연계의 어려움.전문인력확보
2	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	1992.6.27	4인	2인	1521	자급	국보	시보	성.가족폭력상담, 의료.법적지원, 교육활동, 조사, 홍보.출판등등	재정난,지원체계미비, 전문교육기관및 재교육시설필요
						ㅇ	ㅇ	ㅇ		
3	청주성폭력상담소	1996.5.29	5인	자원활동가 10인	151	자급	국보	시보	성폭력.성상담, 성교육, 조사, 홍보.	
						ㅇ	ㅇ	ㅇ		
4	여성의소리부설성폭력피해상담소	1996.8.29	5인	10인	330	자급	국보	시보	성.가족폭력상담, 소식지발송, 인권운동, 홍보활동, 성교육	재정난, 지역사회의인식부족, 타기관과의 연계미흡.
						ㅇ	ㅇ	ㅇ		
5	울산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1996.7.19	3인		490	자급	국보	시보	상담, 성강연, 문화행사.	재정난, 법적체계미비.
						ㅇ				
6	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1995.9.22	3인	1인	220	자급	국보	시보	교육활동, 출판,홍보활동, 성폭력예방활동	재정난,피해자보호문제
						ㅇ	ㅇ			
7	부산성폭력상담소	1992.7	8인	1인	222	자급	국보	시보	교육.선전.기획. 홍보. 출판. 연대사업	재정난(전문인력확보미흡,)적은지원.,많은행정적요구. 법적틀미흡.
						ㅇ	ㅇ			
8	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1995.8.10	3인	자원활동가15인	408	자급	국보	시보	상담및인권보호, 성교육	재정난, 상담의전문성부족.
						ㅇ	ㅇ			
9	춘천성폭력상담소	1995.12.1.	3인		447	자급	국보	시보	성폭력.,여성.성상담.지원체계와연결.	쉼터필요,피해자의경제적상황으로인한한계.
						ㅇ	ㅇ	ㅇ		
10	인천성폭력상담소	1995.8.3	3인	8인	580	자급	국보	시보	성폭력.성상담, 지원체계와연결,탄원서제출	재정난, 행정난.
						ㅇ	ㅇ	ㅇ		

11	대구성폭력상담소	1995.9.	3인	자원활동가10인	348	자급 o	국보 o	시보 o	성폭력.성상담, 교육, 조사.자료집발간.	(24시간)과중한업무,인적.재정적어려움,상담원재교육필요,치료프로그램개발필요.
12	창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1996.4.20	4인	자원활동가30인	336	자급 o	국보 o	시보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성교육,상담.	쉼터.치료센터필요.
13	원주가정법률상담소	1996.5.17	3인	2인	82	자급 o	국보	시보 o	상담활동,예방교육,연구사업.	
14	한국여성의전화부산지부 성폭력상담소	1995.5.15	7인	2인(자원활동가15인)	1323	자급 o (75%)	국보 o (25%)	시보	성.성폭력상담,지원체계연결,교육,쉼터운영,노인봉사,자료지발간.	(24시간)재정난,상담자원봉사자필요,상담원재교육필요,프로그램개발필요.
15	강화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1995.8.14	2인	자원활동가16인	50	자급	국보	시보	성교육,상담원교육	상담원확보및교육(한정된 학과),재정난.
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1996.9.1.	2인	자원활동가10인	57	자급	국보	시보	성폭력.성.가정상담,지원체계연결.	쉼터필요,재정적인분리가 안되어 있다.
17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1995.8.29.	3인	자원활동가3인	664	자급 o	국보 o	시보 o	성폭력.성상담,지원체계연결.	재정난, 인력난.
18	제주여민회부설상담소	1995.12.1.	1인	자원활동가5인	207	자급 o	국보	시보	성폭력.성상담,성교육,출판.홍보.	재정난,상담원의전문성.

2) 특성

a. 설립 시기

성폭력 상담소 18개소의 설립시기는 91년(1개소), 92년(2개소), 95년(9개소), 96년(6개소)이다. 상담소 활동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곳은 3개소이며, 3년 이상이 15개소로 94년 4월 1일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설립된 곳이 다수를 차지한다.

b. 상근자 수

상근자가 5인 이상인 곳은 5개소이며<10명(1), 8명(1), 7명(1), 5명(2)>, 5인 이하가 13개소이다 <4명(2), 3명(8), 2명(2), 1명(1)>.

c.상담원 수

상담원 수가 10인 이상인 곳은 9개소이며 <150명(1), 30인(1), 15명(3), 10인(4)>, 10인 이하가 9개소이다<8명(1), 5명(1), 3명(1), 2명(2), 1명(2), 없는 곳(2)>.

d. 상담건수

상담건수가 1000건 이상인 곳은 3개소<15,000건(1), 1500건(1), 1300건(1)>이며, 600건이 1 개소, 14개소는 상담건수가 500 건 이하이다.

e. 활동내용

상담소들의 주된 활동은 성폭력피해상담이며 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법적, 의료적 지원을 함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연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상담외에도 성상담,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족문제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다.

f. 운영상의 어려움

거의 모든 상담소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정난과 전문인력의 확보를 들고 있다. 피해자 지원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법적, 의료적 지원체계 확보의 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교육장소와 피난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g. 재정 현황

상담소 재정을 자급, 국가보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8개소이며, 자급, 국가보조로 운영하는 상담소는 4개소, 자급,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상담소는 2개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급으로만 운영되는 곳도 3개소이다.

3) 평가 및 문제

성폭력상담소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가 95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현재 6개 도시와 6개도에 23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각 지역별로 보면 아직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는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상담소들의 상근자 수도 3인 이하가 13개소이며 상담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가 9개소로 상담건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가 14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담소들의 현 실정은 해마다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소들은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적 자원 확보를 들고 있다. 특히 의료, 법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 내담자 지원활동에서 의료적, 법적 지원은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거의 필수적이다.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임신, 낙태의 문제, 증거물 확보의 문제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신고율이 낮은 이유가 성폭력을 순결상실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증거물 확보의 문제, 경찰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소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대처해 주어야 한다. 우리사회 성폭력 신고율이 2%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피해자의 고소율이 20%에 달하는 것은 상담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진과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들과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각 상담소가 개별적 섭외를 통해 전문가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상담소의 역량이나 지역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심있는 전문가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연계망 구축,

지속적인 지원 유지를 위해 상담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 수행범위를 한정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이 상담소들의 낮은 상담건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담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거의 모든 상담소가 국비나 시비 보조 유무를 떠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소의 규모와 역할은 재정상황에 의해 거의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있다. 그러므로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를 위한 자체적 노력과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제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있다.

이렇듯 현재 성폭력상담소들은 재정적, 인적자원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성폭력 근절활동은 물론이고 충분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어느 수준인지를 명백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열림터 하나뿐이다. 보호시설로서 피해자를 지원을 하는 곳은 열림터가 유일한 곳이므로 여기서는 1994년 9월에 개설한 열림터의 지원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열림터의 필요성 및 개소

199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해 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유할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들 중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등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사는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하

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위한 공간의 필요로 인하여 1994년 9월 열림터를 개설하였다.

2) 수용정원 및 이용기간

열림터는 동시에 10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열림터는 단기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3) 피해자 실태

94년 9월부터 97년 6월 30일 현재 총 69명의 내담자가 열림터에서 상담 및 의료적 · 법률적 지원을 받고 퇴소하였다. 현재 열림터에는 피해자 2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며 피해자는 51명이고 그 가족이 20명이다. 본고에서는 피해자 51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a. 피해유형

강 간								성 추 행			계
친부	의부	(사촌) 오빠	형부	동네	데이트	직장	모르는 사람	친부	의부	삼촌	
23명	2명	2명	2명	3명	3명	1명	2명	11명	1명	1명	51명
45.1%	3.9%	3.9%	3.9%	5.9%	5.9%	2.0%	3.9%	21.5%	2.0%	2.0%	100.0%

열림터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82.3%이다. 이는 열림터의 주 기능인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친부에 의한 피해가 66.6%를 차지해 친족성폭력의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b. 피해자 연령

7세 이하	8 ~ 13세	14 ~ 16세	17 ~ 19세	20 ~ 30세	31세 이상	계
4명 (7.8%)	13명 (25.5%)	20 (39.2%)	6 (11.8%)	7 (13.7%)	1 (2.0%)	51 (100.0%)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4.8%이다. 이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어린시절부터 그 피해가 시작되어 열림터를 이용하는 내담자 대부분이 청소년기인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c. 피해자 학력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졸	대졸	기타	계
4명 (7.8%)	11명 (21.6%)	22명 (43.0%)	6명 (11.8%)	3명 (5.9%)	3명 (5.9%)	1명 (2.0%)	1명 (2.0%)	51명 (100.0%)

d. 지원현황

개별상담: 개별 상담은 피해자 개인이 주1회 상담원에 의한 면접상담 또는 심리상담지원위 소속 심리상담전문가에 의해 면접상담이 이루어진다.

집단상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고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경험을 나눔으로써 고립감과 이질감 그리고 자기비하감 등 심리적 혼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집단상담은 피해자, 가족, 퇴소자는 물론,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퇴소자들이 새로운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피해후유증을 돌아보고 서로 지지하고 이해하며 힘을 주는 퇴소자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연계: 피해와 관련된 성병치료, 임신방지, 진단서 발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를 연계한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분노 등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정신과에 의뢰하여 임상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

도록 한다. 특히 성추행일 경우 정신과 상담이후 고소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고소 및 재판지원:

열림터 피해자 총 51명 중 17명이 고소하여 33.3%의 고소율을 나타냈다. 이중 1명의 피해자가 2명의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형량 현황>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무혐의	진행중	계
5명(27.8%)	7명(38.8%)	1명(5.6%)	1명(5.6%)	4(22.2%)	18명(100.0%)

타보호시설 연계: 보호시설 연계는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에 대한 분석이다.

자기집	타 보호시설	친지 집	어머니 집	기타	계
34명(49.3%)	17명(24.6%)	12명(17.4%)	2명(2.9%)	4명(5.8%)	69명(100.0%)

4) 재정 현황

열림터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한 국가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지고 국가보조금의 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이다. 물론 자부담금도 있지만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제외하고 내담자들에게 질적이고 충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열림터는 내담자에게 상담, 의료, 자립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규모로는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5)운영상의 어려움

a. 학업문제

열림터 내담자는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에 의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피해자가 76.5%이다. 그러나 열림터는 단기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열림터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게다가 전학을 하려고 해도 친족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곧 친권자이므로 가해자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전학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호시설에 있

는 피해자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장기보호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b. 의료적 지원체계

열림터 피해자는 산부인과 진료, 치료 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비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공립 병원, 보건소 등에서 증거채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치료비 등이 저렴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c. 타보호시설 연계

열림터는 단기 보호시설이고 가해자가 친부나 가족인 경우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장기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호시설 관계자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순결을 잃은 여자'로 바라보는 등 피해여성에게 또다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피해자는 적응의 어려움을 갖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 관련자에 대한 성폭력 교육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장기보호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d. 경찰 지원

열림터 내담자의 경우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 고소율이 3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지원체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연계해서 조사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사과정에서부터 고소결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열림터에는 자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경찰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수사과정은 피해자에게 힘이 되기 보다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히려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전담하는 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 퇴소후 지원

어머니가 없는 내담자의 경우 열림터에서 피해에 대한 심리적 치유를 한 후 퇴소하여 귀가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인 아버지가 구속되면 남아있는 동생들과의 부양문제가 심각해진다. 피해자는 소녀가장이 되므로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어머니가 있다해도, 남편이 구속되거나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전업주부인 경우 남아있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몹시 힘들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현실적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어린 딸의 피해 후유증 치유를 위한 수단강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혼을 안해도 모자가정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어야 하며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

f.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가 상담 확보의 필요성

열림터 피해자는 수차례의 강간이나 장기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프로그램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정신과, 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적극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왜곡된 편견 등은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치유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Ⅲ.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

이제까지 국내의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을 각 분야별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법 제도적으로는 피해자의 권익보장과 충분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상담소의 규모나 역할 역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성폭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떠한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인지를 몇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예방적 측면

(1)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학생 순결교육 위주인 생물학적이고 남녀불평등한 성교육이 아닌 성을 긍정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필수화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 의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 향락, 퇴폐적인 사회 문화와 비디오, 영화 등 음란 영상물, 선정적인 광고나 언론보도 등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공익광고 필수화

일간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하고 각 방송국의 공익광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고소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2. 처벌적 측면

현재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별법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접하면서 특별법의 문제점들을 경험한 여성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3. 사후지원적 측면

(1)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극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 뿐만 아니라 의료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의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1차적인 집단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질적인 증가도 요구된다.

(2) 재정적 지원

특별법에 의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재정보조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에 필요한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성폭력 후유증을 줄이고 지원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전문경찰제도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지원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경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경찰대학이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 과목화해야 한다. 또한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제2의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하는 전문 경찰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4) 의료제도적 연계망

성폭력 특별법에 명시된 의료보조 조항을 현실화시켜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

시설과 국공립 병원이 연계되어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비용의 부담을 갖는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험수가를 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5) 장기보호시설의 필요성

보호시설로써는 단기 보호시설 한 곳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인 지원면에서도 열악하지만 단기 보호시설이므로 학교 문제, 퇴소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는 타 보호시설로 연계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심리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장기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법적·제도적인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예방, 교육, 연구 등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델이 적합하며 어떠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성폭력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단체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해 나가는 연구소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외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 원 숙 (강남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Ⅰ. 서 론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포괄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Koss & Harvey는 포괄적 서비스체계의 구성요소로서 첫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서비스, 의료적 서비스, 경찰 및 사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신의료서비스 그리고 기타서비스 체계, 둘째, 가해자 처벌을 위한 구속 및 사법처리 그리고 대안적 치료 체계, 셋째, 사회운동, 지역사회교육 그리고 예방적 대책을 제시한다.(Koss & Harvey,1987,64-69). 이는 성폭력에의 효과적 대처에는 위기개입뿐 아니라 의료분야, 경찰 및 사법체계, 사회복지분야 및 정신의료분야까지 서비스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성폭력을 근절 혹은 감소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이지만, 가해자처벌 및 치료 나아가서 사회운동, 지역사회교육 그리고 예방적 노력까지 병행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전문분야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폭력에 대한 범 사회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비견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나,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은 서구사회에서도 30년 정도의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거의 혁신적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970년까지 미국에는 성폭력관련 옹호단체나 서비스 기관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과 관련 사법기관은 강간을 신고하는 피해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고, 마지못해 심지어는 투덜되면서 강간피해자를 대하였다.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을 비롯한 사법체계로부터 제2의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인격과 안녕이 무시된 거칠은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설사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포기한다고 해도

상황은 별로 나을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제2의 성폭력이 가해지던 사회적 맥락에 변화가 온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운동에 기인한다. 1960년대에 시작된 신페미니스트(new feminist)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사회이슈로 부각시키고 이를 성폭력반대운동(anti-rape movement)으로 전개하였으며, 성폭력위기센터는 이 운동의 열매라고 하겠다. 성폭력반대운동와 성폭력위기센터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전개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반대운동과 성폭력위기센터의 도전에 대하여 경찰 및 사법체계,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및 정신의료분야의 반응이라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런 도전과 응전이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1970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성폭력위기센터들이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 널리 설립되었다. 이들 성폭력위기센터는 해당 지역 혹은 국가에서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발달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성폭력위기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사회운동은 성폭력위기센터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성폭력위기센터 운동의 발전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성폭력반대운동은 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하여 어떤 변화를 시도해 왔고, 과연 경찰, 의료, 사회복지분야 등 관련된 여러 분야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성폭력위기센터는 어떻게 변화되고 관련분야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적 기원과 특성을 고찰하고, 영국과 미국에서의 성폭력위기센터의 설립과 발전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분야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므로써, 성폭력위기센터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성폭력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 기원

1970년대 초, 페미니스트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집합적으로 성폭력의 경험을 규명하고 성폭력위기전화를 설립하였다. 미국 성폭력위기센터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신페미니스트운동(new feminist movement)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미국의 여성운동은 크게 두 계파로 구분되어진다. 관료적 계파는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NOW)과 the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등으로 대표되며 1966년 Betty Friedan과 이미 정치 주류에 관여되어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집합주의자(collectivist)계파는 '소집단 페미니즘(small group feminism)'과 여성해방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권운동과 신좌익운동에 참여하였던 소장층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두 계파 중에서 성폭력반대운동은 집합주의자 계파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성폭력반대운동이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위에서부터의 변화노력이 아니고 풀뿌리행동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Matthews,1994, 1-10)

뉴욕급진주의 페미니스트에 의하면, 1971년 1월 24일 센클라멘토의 에피스코팔 교회에서 열린 강연회에 300명이 모였으며, 1971년 4월 17일에는 성폭력에 관한 회의가 열렸고,이를 계기로 성폭력에 관한 페미니스트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Susan Brownmiller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Against Our Will(1975)"을 출간하엿다.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성폭력을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집합적 행동이 요청된다는 인식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와 "개인적 해결책은 없다(There are no individual solutions)" 등의 슬로건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Matthews,9).

성폭력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 기원은 사례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의식화과정에서 출발하였고 전형적 페미니스트 모델에 의해 설립되었던 LACAAW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전형적 페미니스트 모델에 의한 성폭력위기전화

LACAAW(the Los Angels Commission on Assaults Against Women: 이하

LACAAW)는 1972년과 1973년 사이에 설립되었으며 집합주의자 페미니즘의 이상적인 모델에 가장 잘 부합된다. 이를 시작한 대다수 여성들은 의식화(conscious-raising)에 참여한 반문화적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였다.

LACAAW는 크렌셔 여성센터(The Crenshaw Women's Center)와 웨스트사이드여성센터(Westside Women's Center)의 성폭력반대운동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1968년 시카고 여성해방회의에 참석하였던 UCLA여성이 캠퍼스에서 여성해방집단을 시작하였다. 성폭력은 회원 한 명이 히치하이킹하다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크렌셔여성센터에 反성폭력행동대(Anti-Rape Sqaud)를 구성하였다. 이 행동대의 일차적 목적은 피해자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의식화를 도모하는데 있었으며, 이 접근법은 피해자의 능력향상(empowerment)을 중요시하는 페미니스트 성폭력반대 운동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 反성폭력행동대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기존의 제도와의 상호작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행동이 모색되었다.

한편, 1971년 집합주의 여성은 산타모니카 3번가에서 매주 목요일 밤에 의식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의 보편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反성폭력행동대를 결성하고 크렌셔여성센터와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신원이 알려진 성폭력 가해자에게 직접적 행동을 취하였다(예, 가해자의 사진을 붙이고 이 남자는 여성에게 성폭행한다라고 써 넣기 등). 이와같은 직접적 행동은 의식화를 지향하는 집합주의자 페미니스트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게릴라식 전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다른 방식의 대처방안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 전통은 성폭력반대운동가들이 행진이나 데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초창기에는 가해자 개인을 목표로 하였지만 나중에는 가시적인 거리차원에서의 정치적 활동으로 경찰 등을 목표로 하였다. 웨스트사이드여성센터와 反성폭력행동대와의 관계는 집합주의자 조직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反성폭력행동대는 여성센터의 정규모임에는 포함되지만 결코 공식적 프로젝트로서 위치하지는 않았다. 웨스트사이드와 크렌셔의 反성폭력행동대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는 체계적이었다. 즉 웨스트사이드 反성폭력행동대는 정규모임을 가졌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비공식적 상담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직접적 행동도 취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식석상에서의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에 도전하여 예상치 못했던 효과를 거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해

자에 대한 게릴라전법으로 부터 탈피하여,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反성폭력행동대의 노력은 市위원인 Pat Russell이 여성센터에 600달러의 기부금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위기전화의 설립이 가능케되었고, 이 위기전화는 LACAAW라는 공식적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Matthews, 18-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페미니스 모델에 의한 성폭력위기센터는 ① 페미니스트의 의식화과정에서 출발하였고, ② 풀뿌리행동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경찰 등 제도권에 관해 도전하였을 뿐 아니라, ③ 피해여성의 능력향상에 초점을 둔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시도하였으며, ④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행동방법을 모색하였다.

Koss & Harvey에 의하면, 페미니스트적 사고와 행동은 성폭력위기센터 운동에적어도 4가지 관점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첫째, 페미니즘은 사회변화를 위한 구체적 채널을 추구하던 여성계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특징적인 변화전략은 집합적 행동과 사법개혁이었다.

둘째, 페미니스트는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외상을 명료화시켰고 이런 외상적 경험을 기존의 의료, 정신의료 및 경찰이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였다.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분석은 이 운동의 사회변화 목적을 성폭력의 후유증(외상)을 감소시키는 임상적 목표에 연계시켰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적어도 성폭력위기센터 운동 초창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와 사회변화 노력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셋째, 페미니즘은 전통적(예를 들어 가부장적) 구조와 의사결정방식에 대해-공공서비스 기관의 위계적 구조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비판적 태도를 가졌다. 이런 비판적 의식으로 인하여, 페미니즘은 덜 위계적이며 보다 인간적이며 평등주의적인 조직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졌으며, 여성이 서로 돕기 위해 집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기관(제도)을 설립하고 권력을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런 목적은 풀뿌리적 성폭력위기센터에서 가장 분명하게 구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은 성공적으로 기존의 페미니스트 조직을 동원하였다. 전국 혹은 지역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위기센터의 구축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오늘의 성폭력위기센터가 있기까지 페미니즘의 공헌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Koss & Harvey, 75).

Ⅲ. 성폭력위기센터의 역사적 전개

1. 미국에서의 성폭력위기센터의 발전과정

최초의 성폭력위기센터는 1970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6-7개의 센터가 창설되었으며, 이들 센터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공유하였고 페미니스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Bay Area Women Against Rape(BAWAR)은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1972년 조직되었다. 이 집단은 히치하이킹 안전지침,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정보 등을 유포시켰다. 그리하여 1973년에는 사무실운영, 반일제 코디네이터, 24시간 위기전화서비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위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2만5천달러의 市기금을 요청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Matthews, 8-9).

워싱톤에서도 1972년 성폭력위기센터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하루 평균 20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의료 및 법적 조언과 "동정(sympahty)"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피해여성에게 병원과 경찰서까지 동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성폭력 피해여성이 즉각적인 도움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 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해방집단인 워싱톤지역 여성센터의 토론집단에 소속된 10여명의 여성회원에 의해 조직되었다. 1973년 워싱톤 성폭력위기센터는 회보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성폭력반대운동을 촉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BAWAR와 워싱톤 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반대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의 주축이 되었다(9).

초기 센터들은 다른 성폭력 반대 시민운동 집단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갔다. 예를 들어, 1973년 전국여성조직(the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이하 NOW)은 성폭력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폭력반대 시민 과업팀의 형성을 도왔다. 1974년에는 여성정책연구센터가 국립법집행 및 형사정의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에서 프로젝트 후원을 받아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27개 주에 61개의 지역사회중심 성폭력위기센터가 있었다. 같은 해, NOW는 39개 주정부에서 136개 反성폭력프로젝트(센터 혹은 과업팀)의 출범을 도왔다(Brodyaga et al., 1975; Koss & Harvey, 73에서 재인용).

성폭력위기센터운동은 1970년대에 걸쳐 급속히 확장되었다. 각 지역에 성폭력 위기센터들이 설립되었고, 이 센터들은 주정부 단위로 혹은 지역단위로 동맹을 결성하여 사회변화와 사법개혁을 시도하였다. 또한 성폭력 이슈를 다루는 전국적 조직도 만들어졌다. 1976년 연방입법(Public Law#94-63)은 국립 성폭력 예방 및 통제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Rape: 이하 NCPCR)를 설립하였고, 성폭력의 원인, 피해자에 대한 정신의료적 영향 그리고 치료 및 예방전략의 효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시범사업, 훈련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전국 성폭력예방 및 통제센터는 국립정신보건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소속되었는데, 이는 강간과 성폭력이 피해자, 가족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정서적 충격과 정신의학적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국립성폭력예방 및 통제센터(NCPCR)는 성폭력 관련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전통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센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폭력위기센터 운동의 결과로 수립되었다. 풀뿌리 정치적 행동주의(grass-roots political activism)는 급속히 증가되어가는 지역사회 중심의 성폭력센터들을 지역 혹은 전국 동맹으로 발달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79년 25개 州의 40여 성폭력센터의 대표들이 위스콘신주 제네바에 모여서 전국성폭력대책연맹(the National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NCASA)을 결성하였고, 이 연맹은 센터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보호노력을 지방·지역·전국적 수준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오늘날, 전국성폭력대책연맹(NCASA)은 성폭력위기센터 운동의 풀뿌리적 정치적 쟁점을 새로운 입법, 공공정책 그리고 사법적 개혁 등의 공적인 정치적 방식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Koss & Harvey, 74).

1979년까지 성폭력위기센터는 미국 모든 주정부에 적어도 한 개의 센터는 설립되어 있었다. 1983년까지는 대다수 성폭력센터들은 전국성폭력대책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초장기에 형성된 성폭력위기센터들이 평등주의적이며, 자원봉사 집합체(egalitarian, all-volunteer collectives)로서 시작되었지만, 새로 설립된 센터들도 점차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성폭력위기센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성폭력위기센터는 사회의 보수적 경향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적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위기센터운동은 새로운 지역사회와 시민 행동

집단에 의해 지속되어 나가고 있다.

2. 영국 RCC(성폭력위기센터)의 발전과정

영국의 성폭력위기센터(Rape Crisis Centre: 이하 RCC)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여성운동에서 부터 발달되었다. 영국에서도 1970년대 초에 페미니스트들이 집합적으로 폭력과 성학대의 경험을 탐구하면서 최초의 성폭력위기전화를 수립하였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들이 하나의 집단 혹은 사회계층으로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위기전화로 보다 널리 알려져 왔으며, 기존의 공적 및 민간서비스가 모두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성폭력위기센터는 미국보다 몇 년 후인 1976년 런던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by and for women)'이라는 슬로건하에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Gillespie,1994,1-2).

1980년대 페미니스트 실천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지역사회 중심보호정책으로 재정 지원이 위축되었고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강조되었다. 또한, 몇차례의 입법변화를 거쳐서 사회문제의 집합적 해결보다는 개인의 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성폭력위기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Gillespie,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페미니스트는 남성의 폭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고취 및 지원서비스 구축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복지, 주택, 경찰 그리고 사법체계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페미니스트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성폭력위기센터와 위기전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가정폭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을 포함한다.

그러나, 민간 및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타협이 요청되었다. 자율적 여성집단은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원의 출처이자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보다 전통적인 사회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1989년까지 적어도 55개의 성폭력위기센터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설립되어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 성폭력위기센터는 현재

재정적 부족과 과도한 서비스 요구문제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성폭력 위기센터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여러 형태로 변화된 것과는 달리, 영국의 성폭력 위기센터의 비교적 초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Ⅳ. 성폭력위기센터의 사회변화를 위한 도전과 이에 대한 각 전문분야의 대응

성폭력반대운동과 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에 관한 페미니스트적 분석을 토대로 사법체계, 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다각적으로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는 성폭력위기센터는 각 전문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이에 반응하여 각 전문분야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법체계에 대한 변화노력과 이에 대한 사법체계의 반응

성폭력반대운동은 기존의 사회체계가 성폭력피해여성을 부당하게 처우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적어도 초창기에는 강한 반제도적·반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경찰 및 사법체계는 성폭력반대운동가의 일차적인 공격목표였으며, 심지어 많은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기존의 사법체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간주하였다.

성폭력피해자는 자주 경찰 조사과정이 성폭력 자체만큼이나 잔인하고 모욕적이라고(당신도 즐긴 것이요?, 처녀입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소? 등) 말하며, 성폭력반대운동의 페미니스트는 이런 처우를 "제 2의 성폭력"이라고 지칭한다(Matthews, 11).

성폭력반대운동가들은 경찰이 이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운동가와 경찰과의 관계가 단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좌익과 반문화에 기반을 두었던 페미니스트

성폭력반대운동가들은 히피나, 반전시위자 그리고 학생운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처우에서 경찰에 대해 일반적인 적대감을 느꼈으며 이 감정은 상호적이었다(12).

경찰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전략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은 앞서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공공강연 등에서 경찰의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도전하였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경찰이 페미니스트를 초청하여 성폭력에 관한 강의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뉴욕시 경찰은 성폭력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여경으로만 구성된 조사부서를 발족시켰다. 이런 변화는 경찰이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수용하여서, 성폭력 신화(그릇된 사회적 통념)에서 탈피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대표적 출처는 연방 사법기관인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ion(이하 LEAA)였다. LEAA는 1977년 기금이 범죄관련 사회프로그램에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성폭력위기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LEAA의 보조금은 성폭력반대 운동에서 심한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많은 조직체들 특히 페미니스트 전통이 강한 조직체들은 이 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지원을 거부하였다.(107) LEAA의 재정지원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규모가 컸다.[1] 사법체계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1979년 켈리포니아주에서는 상원의원 Robbins와 하원의원 Waters가 성폭력위기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을 크게 상향조정하고 지속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80년에 통과되었으며 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성폭력 담당 검사의 훈련 그리고 사법집행관리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the Office of Criminal Justice Planning(이하 OCJP)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기금까지 이전·통합운영되었다. OCJP는 성폭력부서를 설치하고 州

1) 예를 들어, 1973년 의회가 통과시킨 전국성폭력예방과 통제센터는 정신의료 분야에 소속되었으며, 이로 부터의 재정지원은 조사연구와 교육에 초점을 두었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직접적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서비스부도 부분적으로 성폭력위기센터에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그 규모는 1978년 당시 센터 당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재정지원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던 성폭력위기센터에 임대료, 전화료, 반일제 직원의 고용을 가능케 하였다. 단, 사회복지서비스부의 재정지원은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성폭력위기센터를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기관으로 전환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LEAA의 후원을 받았던 Yolo군 성폭력위기센터는 48,000 달러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다른 기관에 비해 재정지원의 규모가 매우 컸다.

자문위원회(the State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였다.(108-109)

OCJP의 州자문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5명은 사법체계에서 임명되고 나머지 6명은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의료전문가와 성폭력위기센터의 대표를 선임하였다. 이와같이 여성을 다수로 하는 위원회 구성은 OCJP프로그램이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채널을 보장해 주고 페미니스트에게 감독권한을 인정하는 제스쳐였다. 나아가서, 이 위원회는 지원기관 선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았다.(109) 그리하여 성폭력프로그램은 사법체계인 OCJP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는 독립적 성격을 획득하였다. 실제적으로 1980년 OCJP의 성폭력프로그램이 구체화되었을 때 부서장으로서 사회복지사이며 보호관찰관을 지냈던 前 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110) 공적기관 그것도 사법체계에도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은 크게 비판받아 왔으며 성폭력 위기센터 운동 초창기부터 사회변화활동의 목표가 되어왔다. 1975년 이런 활동의 결과로서 여성정책연구센터(the Center for Women's Policy Studies)는 미국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조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극적인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패키지(prescriptive package)"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찰 및 다른 사법관련 공무원들에게 페미니스트 성폭력위기센터에 대한 반감을 버리고 이들을 주요한 동맹자로 인식하도록 고취하고 있다(Koss & Harvey, 79).

이와 같이, 미국의 사법체계는 성폭력위기센터의 변화노력에 대응하여 사법절차상의 변화노력 뿐 아니라 경찰, 검사 등에 대한 훈련, 나아가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차원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 성폭력위기센터보다는 온전성향의 페미니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성폭력위기센터와 페미니즘을 인정하고 실무운영의 자율권을 주었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의 변화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성폭력위기센터와 경찰은 소원한 관계에 있으며 경찰은 RCC의 활동을 잠식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체계(Victim Support Schemes; 이하 VSS)라는 민간단체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RCC가 반남성적이고 반경찰적이라고 간주하고 극단적 페미니스트 집단이며, 피해여성에게 성폭력을 보고하지 말도록 설득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성폭력의 신고 및 조사에 일차적 관심이 있고 RCC는 피해여성에게 성폭력의 신고유무에 관련없이 그리고

성폭력의 발생시기(최근 혹은 오래 전)에 상관없이 비밀보장의 원칙하에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RCC는 피해여성이 성폭력을 경찰에 보고하기를 바라지만 피해여성에게 신고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는 않는다

RCC와는 달리, VSS는 경찰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으며 내무부로 부터 충분한 재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1980년대 중앙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에서 VSS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VSS는 영국에서 범죄피해자운동에서 나온 전통적인 민간단체(voluntary organization)이며,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실제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VSS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 대상은 경찰로부터 의뢰된 피해자들이다. VSS는 일차적으로 위기개입모델을 토대로 범죄피해자에게 단기 상담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VSS의 단기위기개입적 접근은 성폭력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1982년 이후 VSS의 전국조직인 NAVSS는 중앙정부에게 서비스를 성폭력피해자에게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RCC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반해, VSS는 대체적으로 경찰로 부터 피해자를 의뢰받는다. RCC와는 달리, VSS는 최근에서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영역으로 들어왔다. VSS훈련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적 상담지원모델인 성폭력외상신드롬(Rape Trauma Syndrome:RTS)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장기적이며 비지시적인 RCC의 지원모델과는 달리 의료적 성향을 지닌 모델이다 (Gillespie, 27-32).

2. 의료 및 정신의료분야에 대한 변화노력과 의료분야의 대응

페미니스트적 성폭력위기센터는 의료분야의 제도적 변화도 추구하였다. 물론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병원은 의미있게 혹은 전적으로 응급실 성폭력 프로토콜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종합병원은 여성성폭력반대조직(Women Organized Against Rape)에게 병원시설을 제공하였고 병원동반프로그램과 병원과 성폭력위기센터의 상호작용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마이애미종합병원의 성폭력치료센터는 매우 효과적인 병원중심의 의사 중심의 성폭력위기센터프로그램이다. 이 센터는 마이애미 의과대학부설이며 의료, 정신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법

계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폭넓게 훈련시켰고,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Koss & Harvey, 78).

병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즉 페미니스트 성폭력위기센터가 병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흡수통합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혹 병원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반대 운동가의 도움을 받으나, 일단 병원에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성폭력반대운동가들을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1973년 애틀란타에서 여성조직이 애틀란타지역성폭력위기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Grady 병원에 의해 주도되었던 성폭력프로젝트를 위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다. Grady병원은 협의회의 도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1974년 성폭력위기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일단 센터가 설립되자 협의회를 모호한 자문위치에 두었다. 심지어, Grady 병원은 협의회의 여성회원이 자원봉사 상담지위를 신청하는 것 조차 거부하였다(Matthews, 12).

정신의료 전문인 또한 성폭력위기센터운동의 사회변화의 주요 초점이었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는 (1) 피해자의 신뢰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질문의 타당성, (2) 성폭력피해자를 정신과 환자와 동일시하는 것, (3)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병리적"으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4) 가해자의 행동이 전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 전통적 정신의학의 진단적 분류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런 입장은 전통적 정신의학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강간외상신드롬(rape trauma syndrome)을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하는 많은 정신의료 전문가들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Koss & Harvey, 78-79).

페미니스트적 성폭력위기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분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성폭력위기센터의 출현과 동시에, 지역사회정신보건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 서비스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즉,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은 자조, 사회적 지지, 대안적 서비스프로그램에의 시민참여 그리고 비전문인와 준전문인력의 능력, 토착(지역주민)워커 등을 주장하였다. 이런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이 주장하는 바는 성폭력위기센터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의식화, 자조, 자기주장, 그리고 사회적 지원활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7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위기센터의 활동은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주장하는 바를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실현하는 셈이었다.

한편 영국 경찰은 VSS이외에도 최근 경찰의 후원을 받는 의료 중심모델의 성

폭행의뢰센터(Sexual Assult Referral Centres: 이하 SARC)를 통하여 RCC의 활동을 잠식하고 있다. SARC는 호주의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개입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영국 SARC는 경찰과 의료계과 손잡고 설립하였고 그 치료대상은 거의 경찰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다. Foley는 영국 SARC는 성폭력의 전문화와 의료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 예라고 지적한다. 이는 여러 매체를 통하여 심한 성폭행을 받은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홍보되어졌다. 이 센터설립의 일차적 동기는 경찰서 밖에서 의료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경찰의 입장에서, 이 센터는 경찰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비판을 배제할 수 있으며 신고를 권장할 수 있으며, 법적 증거확보, AIDS등 질병에 대한 통제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센터는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로서 간호사의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숙녀들의 문제를 다루는 경험이 있으며 성폭력피해여성이 정신의학적으로 환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외형적으로 SARC는 RCC(여성이 소장이며 여성상담자만 고용한다는 점에서)와 유사하지만, 이 센터는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이 센터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는 강간외상신드롬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의 치료가 문제해결이라고 간주되어진다. 이들은 RCC는 전문적 기술을 결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심리-성적 상담에서의 간호사 자격과 경험이 상담자로서의 적절한 자격이라고 본다.

이와같이, SARC는 의료계와 경찰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설립한 성폭력관련센터이며, 실제적으로 이 기관의 최우선적 목표는 경찰에의 신고이다. 상담자들은 피해여성에게 최선의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임을 설득하도록 권고받고 있으며, 의뢰센터의 성공은 신고율에 의해 평가된다. 이 센터에서 다루어진 사례 중에서 경찰의뢰에 의한 사례는 1986-1991년의 전체사례 중 61%를 차지하였다(Foley, 48-53).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SARC가 의료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어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영국 SARC가 경찰의 후원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화시도는 저항받을 것이다.

3. 사회복지분야와의 관계

사회복지분야는 처음부터 성폭력위기센터의 변화목표의 대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페미니스트의 성폭력반대운동 초창기부터 사회복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당대의 사회복지분야 역시 민권운동 등 사회개혁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60년 사회복지분야는 '빈곤에의 전쟁'과 '위대한 사회'에 부응하여 기존의 서비스 위주 그리고 전문성 추구에서 벗어나 사회개혁에 대한 사회사업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있었다(Heus & Pincus,1986; Johnson, 1986).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사회복지전문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지역사회내 인간봉사 분야의 자원이 동원되었던 성폭력위기전화의 설립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모델에 의한 성폭력위기전화

Pasadena YWCA성폭력위기전화(이하 Pasadena)는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이며, 앞서 전형적인 페미니스트 성폭력위기전화인 LACAAW 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Pasadena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페미니스트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성폭력위기전화를 통합시킨 조직운동가들이었다. Pasadena인간관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Nancy Ward는 1973년 친구가 강간당했을 때 대책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였고 후에 위기전화의 소장이 된 Grace Hardgrove도 초대되었다.

반문화적, 급진주의 페미니스트가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던 LACAAW와는 달리, Pasadena는 풀뿌리 급진주의 운동가가 아니라 YWCA와 가족계획지부와 같은 지역사회기관 그리고 병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관련기관들의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정치적 분석을 토대로 위기전화를 운영한다기 보다는, 서비스체계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위기전화는 Pasadena YWCA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YWCA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Pasadena의 설립배경은 이념적 입장과 자원에의 접근뿐 아니라 조직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YWCA성폭력위기전화는 LACAAW의 집

합주의자 스타일과는 달리 어느 정도 관료적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sadena의 설립에 관여하였던 사회복지사와 다른 인간봉사기관의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Pasadena의 조직에서 최대한으로 관료적 양상을 축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Matthews, 28-32).

(2) East Los Angels의 성폭력위기전화

East LA 성폭력위기전화(이하 East LA) 역시 1976년에 사회복지전문가의 주도적 노력으로 설립되었으나, Pasadena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75년 Irene Mendez는 郡 지역사회복지관의 관장이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페미니스조직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LACAAW모임에 지역대표로 참가한 후 자신이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직원들과 함께 위기전화 상담자 훈련에 참여한다. 한편 Mendez는 여성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에 성폭력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병원의료사회사업가인 Connie Destito를 만나게 된다. Mendez의 LACAAW 훈련경험과 Destito의 사회복지 배경이 결합되었으며, 이들은 회원 1인당 25달러의 기부금을 모으고, 이 기금으로 세크라멘트에 대표를 파견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성폭력위기센터건립기금을 위한 세차 및 케이크 판매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East LA성폭력위기선화의 설립방식은 아주 독특한 양상을 띄고 있다. 즉 지도자와 자원봉사자가 모두 전문직 여성이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을 추진할 만큼 전문적 정보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맥도 가지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이들의 기부모금노력은 그들 자신이 기부금을 내고 케이크 판매 등 풀뿌리적이고 전통적으로 여성적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관심을 모우는 사실은 East LA에서는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훈련과정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관점을 형성시켰다.

East LA성폭력위기전화는 우선 Mendez가 지도력과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Mendez가 일하였던 郡지역사회복지관은 연방보조금을 받은 바도 있었으며, 이는 위기전화에 사무실 공간과 전화, 직원의 시간, 지역사회의 발판 등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비록 비공식적 프로젝트였지만, 공적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성은 자원동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교육받고 전문직에서 일하며 조직

기술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32-38).

위의 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위기센터 설립 초창기부터 사회복지전문가는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때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초창기에 이 운동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문가는 자신들도 페미니스트였다. 그리하여 East L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훈련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관점을 확산시키는 노력까지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활용뿐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봉사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네트워크의 활용 그리고 공적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자원제공 그리고 이의 공신력에 의한 지역사회자원동원 등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에 의한 성폭력위기센터들은 순수한 페미니스트들이 조직한 집합주의 성폭력위기센터보다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가와 페미니스트의 협력관계가 모든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이들간에는 지도력과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구조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상황도 발생하였다.(자세한 내용은 Matthews, 제2-8장 참조)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성폭력반대운동이 1970년대 초의 급진적 반문화적 페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초창기 조직형태가 집합주의적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기 성폭력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주의적(egalitairan), 비위계적(non-hierachical) 그리고 합의에 의한 운영을 추구하였다. 또한 반문화에 뿌리를 두었던 초기 운동가들은 권위와 전문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능력향상(empowerment)을 주창하고 어느 여성이든 성폭력위기센터의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사회복지사와 다른 인간봉사서비스 전문가들은 그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성폭력위기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제공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전문성의 추구는 미국 성폭력위기센터가 센터의 폐쇄를 막고 피해여성에게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었던 정부기관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다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성폭력위기센터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표현으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오늘날 이는 또한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여러 인간봉사분야의 치료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치료의 틀은 20세기 후반의 여러 사회문제를 다루는 모델이 되었으며, 이는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 혹은 지자체로 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전문화된 성폭력위기센터의 등장과 관련하여, Matthews

은 주정부기관이 페미니스트 정치적 분석보다는 개별화된 치료모델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주정부 후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발달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성폭력의 후유증을 치료적으로 관리하는데로 초점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이 운동에 보수적 영향을 미쳤다(Matthews, xiii-xiv).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가 페미니스트 관점을 토대로 하는 성폭력위기센터에 전문화, 사회복지서비스모델 그리고 치료중심의 접근법을 접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실은 페미니스트 관점은 사회복지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1960년대 및 1970년대 사회개혁이 주도하였던 시대적 풍토와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으로 사회사업에서는 새로운 실천방법론으로서 급진주의 사회사업, 페미니스트 사회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중심의 사회사업방법론 들이 등장하였고 이들 방법론들 중에서 특히 페미니스트 사회사업은 아내학대, 성폭력 등 여성복지분야의 사회복지실천에 적용되고 있다(Langan & Lee, 1989; 신은주, 1995).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송영인교수는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주최로 열린 제 4회 한미사회복지(사회사업)교육자 공동 심포지엄 '사회사업에서의 페미니스트 관점'이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페미니스트 관점이 사회복지실천 뿐 아니라 교육에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 오늘날 성폭력위기센터의 위치 및 문제점

1. 미국의 성폭력위기센터

미국 성폭력위기서비스는 처음 출발이래 상당히 진화되어왔으나, 핵심적 활동은 항상 유지되어 왔다. 성폭력위기센터는 여러 조직체속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센터는 놀랍게도 일관성있는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성폭력 위기센터는 24시간 위기전화를 통한 위기개입과 성폭력피해자와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일 대 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는 위기전화상담에 응답한다. 피해여성들은 성폭력 직후 전화를 걸기도 하며 혹은 몇 년 있다가 전화하기도 한다. 위기전화는 첫번째 전화상담후 추후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때로 이

는 성폭력피해자가 센터에 와서 상담하도록 하거나, 다른 전문 상담가에게 의뢰되거나 혹은 센터에 조직되어 있는 지지집단에 참여하기도 한다. 덧붙여, 성폭력위기자원봉사자 혹은 직원은 동반서비스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병원, 경찰, 법정에 동반해 주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Matthews, xv).

위기개입서비스 이외에도, 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는 학교, 교회, 지역사회 단체, 기업체 등으로 나가서 성폭력과 성폭력예방에 대한 웍샵을 실시해 준다. 일부 센터는 여성에게 자기방어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에게 자기보호 기술 훈련을 넘어서 여성의 능력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성폭력예방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시되어 왔다. 자기방어기술 훈련은 또한 새로운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교육은 모든 성폭력위기센터의 기본적 활동이다. 최근 일부 센터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내학대와 같은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분야 서비스는 별개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상례이다.

오늘날 미국의 성폭력위기센터의 정확한 수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아래의 연구는 대략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Harvey(1985)는 NCPCR의 후원으로 전국의 성폭력위기센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2] 이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위기센터는 크게 집합주의(Collectives), 수정집합주의(Modified Colletives), 그리고 위계적 프로그램(Hierarchical program)으로 대별되어진다. 동 연구에서는 집합주의조직구조를 가진 성폭력위기센터는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①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직원 혹은 자원봉사자/지역사회이사회의 혼합, ②비위계적, 평등주의적 구조, ③일차적으로 자원봉사자 직원, ④참여적 의사결정, ⑤업무부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최소화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수정집합주의형태의 성폭력위기센터는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①지역사회 혹은 혼합적 이사회, ②준위계적(2-3축), ③ 일차적으로 자원

2) 효과적인 성폭력위기센터를 선정하는 기준은 ①프로그램의 지속성,②조직구조의 명료성, ③계획과정의 명료성, ④직원훈련, ⑤자원봉사자활용 및 훈련, ⑥클라이언트의 선택과 환류에 대한 관심, ⑦특수인구집단에 대한 민감성, ⑧지역사회의 인식도, ⑨지역사회 서비스체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 ⑩지역사회자원의 활용, ⑪성폭력프로그램의 지역 및 전국적 영향력, ⑫기록관리와 자료분석, ⑬연구참여에의 적극성이었다.

봉사자 혹은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의 혼합형, ④참여적 의사결정, ⑤최소화된 업무부서 구분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위계적 조직구조를 가진 성폭력위기센터는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①지역사회 이사회, ②위계적(4 혹은 이상의 축), ③혼합된 혹은 지배적으로 전문인력, ④프로그램과 정책개발에 대한 위계가 분명함, ⑤ 3 혹은 그 이상의 업무부서로 구분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Koss & Harvey, 90).

Harvey는 효과적인 성폭력위기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건간에 공통적으로 ①능력향상(empowerment)을 강조하고 사회변화와 피해자에 지원서비스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적 자세, ②센터의 철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동이 결정되는 "철학적 중심성(philosophical centeredness)", ③지속적인 자체연구를 토대로 한 내적 변화 추구능력, ④사회 및 지역사회변화를 유발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센터의 철학: 성폭력위기센터에는 조직구조적, 프로그램적 그리고 이념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센터의 소속기관(affiliation)과 조직형태는 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집합주의적 조직형태를 가진 프로그램 그리고 대체적으로 독립적 프로그램에서는 페미니스트 성폭력분석이 주요한 프로그램의 이념으로 규명되었다. 서비스 지향적 프로그램은 공적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위계적 조직구조를 가진 센터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센터에서는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를 제외하고 모든 센터들은 능력향상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형태나 소속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과 성폭력 근절을 중요시하였다.

철학적 중심성: 효과적 성폭력 위기센터에서는 센터의 가치와 서비스, 자원봉사자 훈련 그리고 사회변화전략 간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센터에서는 "철학적 표류(philosophical drife)"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센터는 철학이 프로그램개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체연구(self-study): 이들 센터들은 지속적 자체평가를 중요시하고 이들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과 계획을 세우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변화와 지역사회개입: 광범위한 사회변화의 필요성은 성폭력분야에서의

가치전제이다. 이런 가치는 대중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법적 개혁을 위한 캠페인 등에 반영되어 진다(Koss & Harvey, 94-98).

2. 영국 RCC

미국 성폭력위기센터와 마찬가지로, 영국 RCC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능력향상에 초점을 두는 여성중심적 실천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미니스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폭력생존자를[3] 위한 효과적인 여성중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집합적·비위계적 조직형태를 선호하고 기존의 전통적 조직형태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출발점부터 영국 RCC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되 이로부터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추구하여 왔다(Gillespie, 34-35).

전형적으로 RCC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실제적 조언,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전화상담, 일 대 일의 면접 그리고 집단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적 원조에는 의료이슈에 대한 정보와 조언제공, 경찰에의 보고와 법절차 그리고 피해여성을 관련기관까지 동반해 주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모든 성폭력위기센터는 장기적 요구중심의 비지시적·비심판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비밀보장을 해준다. 페미니스트 상담모델은 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설명을 믿어주고, 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장기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삶에 대한 통제감을 다시 얻도록 하므로써 여성의 능력향상을 추구한다(17).

Gillespie는 그동안 영국 성폭력위기센터인 RCC가 직면해 온 문제를 아래의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잘못된 사회적 인식의 문제: Gillespie는 범죄 및 피해자지원 관련문헌에서 성폭력위기센터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반경찰적·반남성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서,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효과적 지원서비스 제공보다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3) 영국문헌에서는 피해여성이라는 용어보다 성폭력생존자(survivors of sexual violence)라는 용어가 페미니스트의 초점인 능력향상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2) 1990년대에는 모든 민간기관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념적 반격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페미니스트의 최전선의 풀뿌리조직체로써 RCC는 서비스를 전문화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적기관으로 부터 재정지원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3) RCC의 재정위기는 이의 업무를 모방하고자 하는 VSS 등과의 경쟁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재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RCC는 경찰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으며 내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VSS에 비해 주변화의 위기에 있다.

(4) 경찰은 성폭력의 신고 및 조사에 일차적 관심이 있는 반면, RCC는 신고여부에 관련없이 비밀의 보장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다. RCC는 반남성적, 반경찰적, 극단적 페미니스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왜곡된 인식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5) VSS는 단기위기개입적이며 의료적 성향을 지닌 모델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접근법이라 하겠다. RCC는 VSS와 서비스차원에서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고 이를 사회에 인식시켜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Gillespie,19-30) .

이와같은 맥락에서 Foley는 성폭력 위기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로서 의료전문화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Foley는 전문가들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저변에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여성의 치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전문가들의 문제를 남성폭력에서 폭력에 대한 여성의 반응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의료화 전문화는 남성의 성폭력이슈를 강간외상신드롬 혹은 매맞는 여성신드롬 등의 의학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이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치료가 요청되며 병원은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혹은 상담서비스의 장소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전문가는 피해여성이 성폭력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의료적 목적은 남성성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사고, 태도 및 행동이 영구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주장된다. 그리하여 성폭력의 의료화(medicalisation)는 성폭력이 여성의 집합적 문제가 아니라 개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인식하도록 하게 되며, 또한 성폭력을 정치이슈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남성과 남성권력이 보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Foley, 44).

RCC는 전문화, 주변화, 의료화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여성중심적 접근을 토대로 한 색깔이 분명한 페미니스트 서비스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 RCC의 생존은 지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국적 연맹의 발달에 기인한다. 1980년대에 걸쳐 연맹의 이슈는 정규적으로 등장된 이슈였다. 이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관리주의(managerialist)압력과 주변화(marginalization)에 저항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일부 RCC는 (페미니스트 센터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연맹을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Gillespie, 32-34).

덧붙여, RCC는 전국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여성계는 자선단체들과 동맹을 맺으며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RCC의 연맹형성 및 발달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에게 재정지원에 대한 압력을 가해주고, 자선단체로부터의 후원을 지지해 주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 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 여성 생존자를 위한 페미니스트서비스의 발달을 지속하면서 지방정부와 공적기관들로 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대적 자율적 여성단체로서 존속해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이런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성폭력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 기원과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위기센터의 발전과정, 성폭력위기센터의 제도적 변화노력에 따른 사법,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위기센터의 위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성폭력위기센터는 페미니스트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사회변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집합주의 페미니스트 전통에서 출발한 성폭력위기센터가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하여 정신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사법분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성폭력위기센터가 풀뿌리 행동주의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성폭력위기센터가 정부차원에서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비교적 페미니스트의 전통을 유보하고 있으나, 경찰이 후원하는 VSS, SARC 등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성폭력위기센터는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변화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위기센터의 사회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경찰, 의료, 정신의료 및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이들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성폭력위기센터도 조직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타 분야 역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상호적이라 하겠다. 또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성폭력위기센터가 전문화 및 주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성폭력위기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1890년대 자원봉사 조직인 우애방문가에 그 기원을 두고 출발한 사회사업(복지)분야는 정신의료 분야에 비하여 전문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전문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위기센터의 전문화 및 주변화 이슈는 상대적 발전단계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전문화 및 주변화이슈는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사실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인간봉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체계 구축에는 여성단체와 성폭력위기센터뿐 아니라 여러 관련전문분야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조체계 구축만이 각 분야의 장점을 최대로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특정전문분야의 욕구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욕구를 최우선시하는 인간중심적 접근을 지향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다전문분야의 협조체계는 성폭력위기센터가 페미니스트의 철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은주,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1995.

제4회 한·미사회복지(사회사업)교육자 공동 심포지엄, "21세기의 사회복지교육 새로운 사회복지문제의 대두와 교과과정 개발, 1997.6.21.

Foley, Marian, "Professionalising the Response to Rape," Lupton, Carol & Terry Gillespie, Working with Violence, London, MacMillan Press, 1994.

Gillespie, Terry, "Under Pressure: Rape Crisis Centers, Multie-Agency Work and Strategies for Survival," Lupton, Carol & Terry Gillespie(eds.), Working with Violence, London, MacMillan Press, 1994.

Heus, Michael & Allen Pincus, The Creative Generalist: A Guide to Social Work Practice, Barneveld: Micamar Publishing, 1986.

Johnson, Lousie C.,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1986.

Koss, Mary P. & Mary R, Harvey, The Rape Victim: Clinical and Community Approaches to Treatment, Lexington: The Stephen Greene Press, 1987.

Langan, Mary & Phil Lee(Eds), Radical Social Work Today, London: Unwin Hyman, Inc., 1989.

Lupton, Carol & Terry Gillespie, Working with Violence, London, MacMillan Press, 1994.

Matthews, Nancy A., Confronting Rape: The Feminist Anti-Rape Movement and the State, Londong: Routledge, 1994.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의 동향

조 주 현 (계명대 여성학)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띄지 못했었다. 강간, 강제추행,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등은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였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었다. 이 각각의 문제들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운동단체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는 아내구타 문제가 열정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성학대, 성희롱 등의 문제가 새롭게 관심의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데에는 여성운동단체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던 가족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는 점,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근대적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점, 개인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성폭력관련연구는 84년 한국여성의 전화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성의 전화 개소와 함께 이 단체가 700여명의 서울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아내구타 설문조사의 결과, 42%의 주부가 결혼 후 적어도 한 번은 남편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4] 이에 대한 그 당시 사회의 반응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때마침 그당시 구타남편을 고소한 아내의 고소장을 기각하면서 검사는 "가정내 문제를 사회로 갖고 나오지 말것"을 주문하였고, 언론은 사설을 통해 "현명한 아내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냈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아내구타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법 상의 성폭력 범주에는 아내구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따로 진행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 등의 이름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아내구타와 근친성학

4) 한국여성의 전화(1984)

대, 강간, 추행, 성희롱등이 동일하게 성별간의 권력차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아내구타를 성폭력의 한 예로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연구동향으로 살펴볼 자료들은 1. 아내구타, 2. 근친강간, 3. 강간, 성희롱 및 정책적인 대책에 관한 연구들이다. 필자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이란 성폭력을 남성지배적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들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란 권력의 문제이며 사회전반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성별 권력관계의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5]

1. 아내 구타

아내구타 연구는 그 입장이 여성주의적인지 혹은 성중립적인지의 여부, 접근방법이 심리학적인지 혹은 사회학적인지에 따라 나뉘어진다. 많은 경우 그것은 이미 "아내구타" 혹은 "아내학대"라는 제목을 사용하는지,[6] 아니면 더욱 강하게 "가부장적 테러리즘"을 사용하는지,[7] 혹은 '부부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8]에 따라 분류된다. 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명시하며 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폭력을 낳게 한 권력적 차이를 전제하는 반면, 후자는 폭력 그 자체에 주목한다.

5) 이 글은 위 주제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필자가 비교적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연구동향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6) 김광일(1988), "아내구타의 대책";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김정옥외(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혜선(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 서명선(1985),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이경희(1995), 「상담사례를 통해 본 매맞는 아내의 가부장적 결혼에 관한 연구」; 이승렬(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쉼터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영란(1992), "매맞는 아내의 경험";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7)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 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8) 김광일(1988), 『가정폭력』; 김광일(1989), "가정폭력과 사회";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 실제"; 김정옥(1993),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일(1988, 1990, 1994)의 연구는 주로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아내구타의 발생빈도 및 주요 경험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고,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감(자아손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구타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여성 환자들의 경우 구타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대단히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비난의 태도를 보였으며 폭력남편들은 70%가 편집성, 반사회적, 충동적,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를 보여주었다. 구타당하는 여성들간에도 특히 교육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능력이 낮거나, 폭력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구타가 심하거나,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김광일의 정신병리학적 연구는 한국사회에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소개해 준 것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구타로 신경정신과를 찾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여성들이거나 여성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특정집단이라는 점, 그리고 주로 정신병리학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정신병리학적 연구는 매맞는 아내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서(낮은 자아존중감 등) 매맞는 아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구타남편이나 구타당하는 아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주로 사회학자들의 연구로부터 나왔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김익기 · 심영희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인 사회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스트라우스(Straus et al)의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를 가지고 서울에 거주하는 1200명의 기혼남녀를 표본선정하여 조사한 이 연구는 스트라우스의 체계이론 systems theory 을 이용하여 폭력의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가설들도 병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구타당하는 아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CTS는 현재 모든 종류의 가정폭력(아내구타,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구타등)의 폭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전세계적으로 애용되는 도구로서 국내연구에서도 형사적책연구원(1992) 뿐 아니라 김정옥(1988, 1993)의 연구가 약간의 수정을 거친 CTS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 자체를 측정하여, 예컨대 미국의 86년 조사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경우는 3%인데 비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경우는 4.4%로서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배우자를 구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92년 조사의 경우, 남편

이 아내를 구타한 경우는 10.6%이고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9)]

그렇다면 미국의 4.4%의 아내와 한국의 4.7%의 아내를 두고 우리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맞는 아내 뿐만 아니라 매맞는 남편도 있음을 걱정해야 할 것인가? 사회학적 연구는 폭력은 어떤 종류도 같은 것이며 따라서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폭력은 같은 것으로서 숫자화시키고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주의 아내구타 연구는 바로 이같은 성별의 무지/무관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만일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매맞는 아내는 구타당할 시에도 저항을 하지 않아야만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참다운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 자체에만 우려를 표명하고 폭력을 낳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타당하는 아내가 맞받아서 남편을 구타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먼저 남편을 구타하기 시작했을 경우, 그 여성은 동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로서 폭력의 맥락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특히 부부관계란 대단히 사적이고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의 권력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부부관계를 연구할 때, 권력관계는 배제한 채 개별적인 폭력행위를 숫자화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연구는 폭력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택하게 된다.

김혜선(1995)은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거쳐간 1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에서 남성우월의 역동기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는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적 가족체계, 폭력문화 등의 사회적 맥락 뿐만 아니라 개별 남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컨대 남성지배의 체계적 구조를 보여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 남성의 책임도 지적하는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주의 아내구타연구의 동향은 가족제도의 특수성보다는 성별간의 폭력이 가족제도안에서 경험된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전반적인 성별관계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여전히 구타당한 여성들의 경험을 논쟁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부장제의 역동적 기능을 세밀하게

9) 심영희(1996),

드러내는 작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을 통해 결혼, 여성의 권리, 폭력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심리적, 사회적, 법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아내구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에는 김광일(1988), 형사정책연구원(1992), 이승렬(1995) 등이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쉼터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여성복지적 상담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들이 이혼을 했을 때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애로점으로 들고 있는 경우나(신은주,1995), 쉼터 이용자들이 다시 구타남편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미국의 경우는 25-46%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5%-90%의 여성이 다시 구타남편에게 돌아가는 점(이승렬, 1995; 김혜선, 1995) 등을 볼 때 한국사회는 복지적 대책마련이 대단히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화살을 빼는 일이지, 화살의 길이, 박힌 정도, 후유증,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차후의 일일 것이다. 아내구타문제에 대한 대책도 늘 그런 급박함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형사사법적 사회복지적 대책만으로 아내구타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깊이있는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야 한다.

2. 근친강간

한국사회에서 근친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에 개소하였는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13세미만 어린이성폭력은 늘 전체 상담건수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33.7%로 증가하였다. 95년 상담의 경우를 보면, 전체 어린이성폭력 중 친족에 의한 어린이성폭력이 30.5%를 차지하며, 강간은 38.8%를 차지한다.[10)] 그러므로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후 가장 큰 "발견"은 한국사회에 어린이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10) 최영애(1996)

추행과 강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근친강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류학자들이 주로 말하는 금기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족외혼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기사회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친강간을 금기로 하는 이유는 성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 사이에 아이를 낳고 결혼하여 가족을 이룰 가능성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가족원 간에 성교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것을 법과 사회규범이 막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근친강간의 금기는 지금까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근친강간은 전혀 금기가 아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친족남자(아버지, 의붓아버지, 할아버지, 형부, 삼촌, 외삼촌, 오빠, 사촌오빠등)와 여아간에 일어나는 근친강간으로서 근친강간의 유형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친족남자와 여아간의 근친강간 경험이 여성의 몇%를 차지하는지 경험 연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여아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최소한의 비율이 100명당 1명인 것으로 보고된다. 말하자면 현재 근친강간의 형태는 아내구타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96년 상담현황을 보면 어린이성폭력 중 97%의 피해자가 여아이며, 가해자는 100%가 남성이다. 근친강간만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100%가 여아이며, 가해자의 100%가 남성이다.[11] 따라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근친강간을 성별의 문제로 보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주현(1993)은 김보은·김진관 사건을 한국사회의 성별간의 권력적 차이가 가족안에 근친강간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근친강간의 문제를 정신병리적인, 임상적 사례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별권력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근친강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가족, 성, 사랑, 욕망, 쾌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현재의 연구동향은 이론과 경험이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성폭력상담소는 자체내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상담일지를 간간이 사례로 소개하는 정도로 경험자료를 모아가고 있으며, 반면에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이론을 소개하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근친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

11) 한국성폭력상담소(1997), 「나눔터」, 6쪽.

에 아직 연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우선 경험사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배태한 근친강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근친강간을 연구할 때 대부분 지적하고 있는 모성에 대한 것이다. 말하자면 엄마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남편과 딸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성행위를 기피했기 때문에 근친강간이 발생했다고 보는 식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아내노릇과 엄마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근친강간을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자가 된다. 또 근친강간의 피해자인 여아의 경우도 조숙하거나 유혹적이었던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막상 가해자인 아버지는 알콜중독자거나 미성숙한 인간으로 치부될 뿐이다. 말하자면 근친강간에 대한 연구의 경우, 관심의 대상이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딸과 엄마에게 향해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는 근친강간이 여아를 통해 여성을 통제하려는 성폭력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친강간이 발생한 가족의 엄마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극도로 남성중심적인 가족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즉 여성주의 근친강간 연구는 나약한 엄마와 유혹적인 딸에 대한 연구보다는 아버지를 관심의 초점에 올려놔야 하며, 그런 근친강간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가족구조 및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강간 및 성희롱, 정책적인 대책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여성주의적 연구로는 1989년의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12]과 한국여성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여성학』 제 5집을 들 수 있다. 이명선(1989)은 강간피해자 여성과의 심층면접과 상담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강간이 억누를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박선미(1989)는 강간재판의 참여관찰과 강간재판 기록의 조사를 통해서 심문의 대상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집중됨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다시한번 성차별적 문화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김선영

12) 김선영(1989), 박선미(1989), 이명선(1989)

(1989)은 사회가 강간이란 '피해자의 잘못이나 유혹으로 자극된 성욕을, 남자이기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충동적인 범죄'라는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한편 조순경(1989)은 작업장에서의 성폭력이 여성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심영희(1989)는 성폭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법적 통제가 이분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영자(1989)는 성폭력이 한국사회의 성의 이중규범과 성의 상품화의 결과이며 여성전반을 통제하는 기제임을 보여주었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에 있어 1989년은 한 획을 긋는 시기였다.

한편 1994년의 우조교 사건 이후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성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인 강간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연속선의 개념을 수용하여 성추행, 성희롱, 포르노, 소프트포르노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의 여성통제 성폭력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작업이 시작됨을 말한다. 성희롱을 '성적 성가심'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신성자(1993,1994, 1995)는 성희롱을 유형화하여 남성들의 성희롱 기준과 여성들의 성희롱 기준이 대단히 다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여성의 시각을 채택할 것과 직장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직장내 성희롱 대처시 여성들의 연대가 중요함으로 지적하였다. 이성은(1995) 역시 성희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과 정부의 기업이나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업차원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구체적인 성적 각본을 만드는 일 등을 제언하고 있다. 심영희(1994)는 포르노를 하드코어포르노와 소프트포르노로 분류한 후 하드코어 포르노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법적 규제를 해야 하며, 반면에 광고, TV연속극, 로맨스 소설등 포르노적 장르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적 페미니즘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정책적인 대책연구로는 사회복지적 대책과 법적 대책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적 대책으로는 쉼터에서 효과적으로 여성주의적 상담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신은주, 1995), 법적 대책으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논의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을 들 수 있다(심영희, 19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1993년 12월에 통과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는 ① 풍속을 해하는 죄(음행매개, 음화 등의 영포/ 음화 등의 제조/ 공연음란), ② 약취와 유인의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상습범/ 미수범), ③ 정조에 관한 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이 포함된다.[13] 그러니까 ① 포르노 제작 및 판매, ② 강제매춘, ③ 강간, 성추행, 근친성학대, 음란 통신 등을 뜻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새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고 있다: 첫째,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을 고수하여 성폭력의 문제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정조의 문제라고 보는 남성적 시각을 반영한 점; 둘째, 성폭력의 포함 범위에 성희롱, 비동의간음죄(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가 아니라 "말이나 행동 몸짓 등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강간한 자로 바꾸는 것), 중추행죄(성기삽입만이 아니라 구강성교, 항문성교, 이물질 삽입 및 성적접촉도 성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아내강간등이 포함되지 못한 점; 세째, 친족강간과 장애자 강간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를 그대로 유지한 점; 네째, 성폭력을 등급별로 나눠놓지 못하고 유형별로 각기 분리시켜 논 점. 또한 성폭력특별법제정 이후 신고율이 너무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경찰 및 여성검사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고, 5년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을 "성폭력을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형량을 조절하여 심각하지만 불확실한 처벌보다는, 약하지만 확실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폭력범에게는 보다 억지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14]

4. 맺으면서

아내구타와 근친강간, 강간, 성희롱은 각각의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성폭력의 공통점은 남성에 의한 여성 통제라는 성별의식을 갖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내구타와 근친강간의 경우 한국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가족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서로를 상처주는 것이 용

13) 보건사회부(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1994. 10, 3-5쪽.
14) 심영희(1995), 81-89쪽.

인되는 제도이며 가족원은 사회가 그들 각자에게 부과한 위계적인 권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연구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하며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질적연구의 심화에 애를 써야 한다. 성별의 권력관계는 양적 연구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의 삶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갖고 사회구조적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정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국내 성폭력 관련 참고자료들

자료집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1994), 「직장내 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토론회.

법제조사국(1991),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간행)

사랑의 전화(1991), 「전화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전기통신공사 조사연구보고서.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1992),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 3회 여성사목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1996),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어린이 성폭력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1996.5.

인천성폭력상담소(1996), 「성교육 강의안」, 제 1기 성교육 강사팀의 공동연구집, 사단법인 인천 여성의 전화 부설 인천성폭력상담소.

정무장관(제2)실(1992), 「직장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교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6),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기념 심포지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6.

한국성폭력상담소(1991-현재), 「나눔터」, 1991.7 창간호 -1997.6 제 22호.

----------(1995), 「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1996),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1996.4.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0), 「아동의 성폭행 실태와 과제」, 제 4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자료집.

----------(199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제 5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1992), 「성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의 전화(1984), 「개원 1주년 기념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 개원 1주년 기념 자료집.

----------(1991), 「성폭력 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2), 「쉼터보고서」

----------(1993),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공모 구타수기), 그린비.

----------(1994),「쉼터이야기」, (쉼터사례집), 그린비.
----------(1994),「여성상담 심포지움」, 한국여성의 전화.
----------(1994),「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1995-현재),「여성의 눈으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범죄」, 제 4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이형자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1993),「아내구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공개토론회 자료집.

연구논문

강선미외(1993),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한국여성학』 제 9집, 한국여성학회.
김광일(1988), 『가정폭력』, 탐구당.
-----(1988), "아내구타의 대책," 『정신건강연구』 제 6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9), "가정폭력과 사회," 『대한의학협회지』 제 32권 9호.
-----(1990), "부부폭력의 임상 실제," 『정신건강연구』 제 9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봄호, 한국여성개발원.
김성천(1992),「한국에서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정옥(1988),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6권 1호.
김정옥외(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1집, 효성가톨릭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 1997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제 6분과 여성사회학 발표논문, mimeo.
김혜선(1995),「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경규(1994),「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 분석」,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선미(1989),「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명선(1985),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신성자(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5집,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직장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관한 연구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장에서의 위계측면에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제 2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4), "직장에서의 성적 성가심Sexual Harassment 경험이 직장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의식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 10권, 경북대학교.
-----(1995), "여성의 대인의존심과 성적 성가심 대응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27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신은주(1995),「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 5집, 한국여성학회.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4), "포르노의 법적 규제와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 10집, 한국여성학회.
-----(1995), "몸의 권리와 성 관련법의 개선안: 권력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11집. 한국여성학회.
-----(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 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기념 심포지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6.
이경희(1995),「상담사례를 통해 본 매맞는 아내의 가부장적 결혼에 대한 연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명선(1989),「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선영(1989),「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

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성은(1995), 「직장 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승렬(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쉼터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원숙(1996), "근친성학대 가족의 역동성과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창강호,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아동성학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 피해아동을 대한 초기 개입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27집.
이재경(1993), "국가와 성통제," 『한국여성학』 제 9집, 한국여성학회.
조순경외(1989), "여성노동과 성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 5집, 한국여성학회.
조주현(1991), "여성과 폭력," 『성의 사회학』, 김동일편, 문음사.
------(1993),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 『한국여성학』 제 9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영란(1992), "매맞는 아내의 경험," 『한국여성학』 제 8집, 한국여성학회.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회복지』 제 2집, 한남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을유문화사.
황은자(1993), "성교육 지침서 분석을 통해 본 성 이중성," 『한국여성학』 제 9집, 한국여성학회.

성폭력문제연구소 소개

성폭력문제연구소 소개

1. 설립취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을 근절시켜 남녀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99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상담소는 199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담활동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제도의 개선, 교육·연구 및 홍보활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문제는 단지 성폭력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성문화, 여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상담, 법적·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후속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방, 교육, 연구 등의 작업이 요구되고, 상담소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이에 본 상담소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의 뒷받침을 위해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부설 연구소를 개설함으로 상담과 운동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과 결과들을 연구물에 반영하고, 이러한 연구물들을 통해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더불어 인간중심적인 건강한 성문화를 이루어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 활동내용

정책분과 :

성폭력, 성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 의료적, 법적지원 등 지원서비스 개발

문화분과 :

성, 성문화, 성폭력 관련 이론 연구 / 각종 실태조사

교육분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훈련 /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성교육

일반 사회교육 / 피해자 및 가족 교육 / 가해자 및 가족 교육

전문가 집단 교육 / 지침서 및 교재개발

상담 및 지원서비스 분과:

상담유형 모델개발 - 전화, 개별·집단상담, 가족 상담 등

서비스 모델 개발 / 열림터 모델 개발

정보네트웍 분과:

국내·외 성폭력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및 정보교환

3. 함께하는 사람들

소 장: 이원숙(강남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책임 연구원:

장화정(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경미(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김지혜(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분과위원장:

정책분과장: 신용자(전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문화분과장: 김준호(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교육분과장: 변혜정(단국대 강사)

상담분과장: 김혜원(이화여대 강사)

정보네트웍분과장: 권진숙(나우리 정신건강센터 소장)

연구위원:

강경화(국회의장 비서관)

김선욱(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옥순(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박진숙(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변재란(영화평론가)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이용재(한국통계공학 대표)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정대현(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조 형(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허라금(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연혁 및 주요활동

개소에서 위기센터 설립까지 (91.4.13 ~ 93.12.3)

상담개시 / 조사·연구·교육활동 / 성폭력사건 재판지원활동 /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 성폭력위기센터 개설 / 성폭력 피해자 김부남 후원회 /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대위 / 윤금이 사건 공대위

1991. 4. 13.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8. 9. 제1회 정기세미나 개최(주제 : 어린이성폭행)
8. 21.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결성
11. 23. 세계 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행사 "어린이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개최
1992. 2. 22. 제2회 정기세미나 개최(주제 : 데이트강간)
3. 27. 확장이전
8. 22. 제3회 정기세미나 개최(주제 : 직장내 성폭행)
1993. 4. 10. 제4회 정기세미나(개소2주년기념 자료집을 위한 WORKSHOP) 개최
10. 11. 확장이전
12. 13. 위기센터 개설

위기센터에서 열림터까지 (93.12.13 ~ 94.9.14)

피난처의 필요 / 열림터 개설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음란 폭력성 조장 매체 대책 시민협의회

1994. 3. 14. 상담지원위원회 결성
9. 14. 열림터 개설

11. 22.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심포지움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개최
11. 17. 성폭력 특별법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담소 등록
12. 22. 성폭력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열림터에서 연구소까지 (94.9.14 ~ 97.7.1)

토요법률상담 실시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활동 /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교육 및 홍보 / 김교사 성폭행 사건 공대위

1995. 1. 23.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림터 허가
3. 4. 토요법률상담 실시
4. 21. 개소 4주년 기념행사 - "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10. 24.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행사 - "내일을 여는 열림터"
1996. 4. 30.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 "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5. 30.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세미나 (부제: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7. 상담4부(PC 상담부) 신설
12. 3.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세미나 (주제: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 I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본 성폭력 실태)
1997. 6. 16. PC 상담 개설

7. 1.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